

# 불법파견, 피한다고 합법이 될 수 없다 장인화 회장이 직접 나서라

6월 13일 6, 7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  
포항, 광양제철소 13업체 8공정에 236명 노동자 전원 승소  
정규직 전환만이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불법파견 범죄기업 포스코 규탄,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장인화 회장은 피하지 말고 직접 불법파견 해결하라'
-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포스코 본사 앞
- 주최 : 금속노조 포항지부 /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순서 : 발언 1.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발언 2.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 3. 김현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롤텍분회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이우만(지회장), 김승필(수석부지회장)
- 문의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010-2674-1266)  
: 이우만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 (010-3502-4566)

○ 6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2020년 1월 20일과 6월 22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6차, 7차 집단 소송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6차, 7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각각 총 320명이었습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자 포스코는 소송 참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 취하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6차 소송에 참여한 90명 중 6명과 7차 소송에 참여한 230명 중 75명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학자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총 8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2,133명 중 577명의 소송을 취하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탄압을 이어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2024년 4월 30일, 5월 9일, 6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 직접교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6월 14일 오전 11시 포스코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불법경영을 규탄하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정규직전환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이번에도 정년도과자 제외 전원 불법파견 인정 장인화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공정과 업무, 자회사, 공급사 구분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  
소송 제기 노동자를 향한 탄압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불법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은 201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차,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은 정년도과자인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법에서 승소했고 3차, 4차 소송에 참여한 337명 중 223명은 고법까지 승소 후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는 5차 소송에 참여한 338명 중 250명이 1심에서 승소했고, 6월 13일에는 6차 81명, 7차 155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와 정년도과자를 제외하면 소송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정규직임을 확인한 것이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간접고용·사내하청’ 사용 업종이다. 포스코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18000여명 이상의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포스코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업무를 해왔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파견법상 파견이 불가능하지만 포스코는 이름만 도급으로 바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 설비에 배치해 직접 작업지시를 하며 일을 시켜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시간·휴게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은 모두 포스코가 결정해왔다. 원청의 작업지시 없이는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는 철강업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스코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 파견을 사용해온 것이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2021년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기금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기존에 보장받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삭제시킨 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소송 취하를 종용해 왔다.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법원의 결정을 모두 무시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자녀학자금 지급’ 시정지시를 결정했고, 2022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녀장학금 차별지급’ 시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는 모두 무시했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결정을 무시해 내려진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과태료 처분도 불응하며 항소했다.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또다시 법원 판결에 불응하며 항소했다. 포스코는 법 위에 군림하며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탄압이 소취하자들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탄압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불법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과 위법이 동원되어 왔다. ‘간접고용·사내하청·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원흉,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포스코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에도 공정분배는 차치하고 지속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위험해도 시키는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발생되어 왔다.

애초에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 노동자로 대체하며 얼마나 많은 노동을 착취해 왔는가? 금속노조는 포스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30일, 5월 9일, 6월 10일 세차례 ‘진짜사장 원청대상 직접교섭’을 요청했다. 그리고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수 차례 권고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판결로 공정과 업무, 자회사, 공급사로 불리는 2차 사내하청업체 구분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임이 확인되었다. 불법파견은 피한다고 합법이 될 수 없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경고한다!

“정규직 전환만이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법파견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동원한다면 시민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함께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더 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요구한다!

“이제는 장인화 회장이 직접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서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통해 죽음의 공장, 살인기업, 불법경영 포스코라는 불명예를 벗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라”

2024년 6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별도 첨부 자료]

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현황

차수	소제기일	사건 진행 내역	최초 소 제기 원고	현재 진행 중인 원고
1	2011/05/31	-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선고 2011가합2198 판결 (원고 패) -2심 : 광주고등법원 (2016/08/17)선고 2013나1128 판결 (원고 승) -3심 : 대법원 (2022/07/28)선고 2016다40439 판결( 원고 승)	16명	15명 승소
2	2016/10/26	-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선고 2016가합777 판결 (원고 패) -2심 : 광주고등법원 (2021/02/03)선고 2019나21018 판결 (원고 승) -3심 : 대법원 (2022/07/28)선고 2021다221638 판결 (원고 승)	46명	44명 승소
3	2016/10/26	-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원고 패) -2심 : 광주고등법원 (2022/02/09)선고 2019나21025 판결 (원고 승) -현재 대법원 2022다225606호 사건으로 상고심 진행 중	13명	8명
4	2017/10/19	-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선고 2017가합13329 판결 (원고 승) -2심 : 광주고등법원 2021나21332호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	324명	215명
5	2018/07/16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1/18)선고 2018가합547908호 판결 (원고 승) -2심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540호 사건으로 항고심 진행 중	338명	250명
6	2020/01/20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6/13)선고 2020가합504379호 판결 (원고 승)	90명	81명
7-1	2021/06/22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6/13)선고 2021가합544275호 판결 (원고 승)	230명	155명
7-2	2021/07/02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4/19)선고 2021가합547779호 판결 (원고 승) -2심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789호 사건으로 항고심 진행 중	13명	9명
8	2022/09/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합11655호 사건으로 진행 중	1066명	776명
9	2024/05/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합10779호 사건으로 진행 중	187명	187명
<b>합계</b>			<b>2,136명</b>	<b>1,553명</b>

## 2. 소송 참여 업체

차 수	소송 참여 업체	공정	업무
1	성광(광양)	열연공장, 냉연공장	천장크레인
	포에이스(광양)		
2	성광(광양)	열연공장, 냉연공장	천장크레인
	포에이스(광양)		공장 업무
			제품 업무
3	포에이스(광양)	열연공장, 냉연공장	공장 업무
	포스코엠텍(광양)	제품(코일) 포장	냉연 제품 포장 업무
4	포트엘(광양)	원료 하역	선석배선(관제작업)
	포지트(포항)		하역기 운전 업무
		화인텍(포항)	스테인리스 제강
	래들		
	정정		
	롤앤롤(포항)	열연부 압연	소둔산세 (CPL, CGL)
			롤 가공 정비
	피엠아이(포항)	소결공장 미분광·조정	롤 교체
미분광			
조정			
5	포에이스(광양)	압연	탈아연
			천장크레인
			공장 업무
	포트엘(광양)	제선-원료하역	제품업무
			하역기 운전 업무
	하역기 모니터링 업무		
	포지트(포항)	후판	벨트컨베이어, 스태커 등 설비 운전 업무
	동일기업(포항)		천장크레인 운전
			나이프 작업
			시편장 작업
가스절단			

6			보수장 검사
			프레스 교정
			쇼트 작업
			입고 운전
			제품 관리
	동화기업(포항)	선재	천장크레인(공장) 및 천장크레인(신호수)
			빌렛 마킹 작업
			그라인딩머신
			포장공정
			제품업무
			천장크레인(제품)
	대명기업(포항)	STS 제강-연주	URB공정업무
			전기로 25톤 크레인업무
			용탕스키머업무
			정정 45톤 크레인업무
			정정공정 업무
	화인텍(포항)	STS 제강, 소둔산세	래들업무
			소둔산세 CPL 업무
	롤앤롤(포항)	열연공정(열연, 후판, 선재)	롤 연마
			롤-초크 정비
		롤 교체(선재)	
피에스씨(포항)	제강-연주	턴디쉬 작업	
		주상직	
		크레인 운전 작업	
		스카핑(핸드) 작업	
		스카핑머신 작업	
		검사 작업	
		절단, 세절	
롤앤롤(포항)	열연공정(열연, 후판, 선재)	롤 연마	
		롤-초크 정비	

			롤 교체(선재)
화인텍(포항)	STS 제강, 소둔산세		래들 업무
			소둔산세 CPL 업무
포트엘(광양)	제선-원료하역 공정		하역기 운전 업무
			하역기 모니터링 업무
포지트(포항)			벨트컨베이어, 스택커 등 설비 운전 업무
대명기업(포항)	STS 제강-연주		정정 업무
			전기로 25톤 크레인 운전 작업
			정정 45톤 크레인 운전 작업
동화기업(포항)	선재		그라인딩머신
			포장공정
			제품업무
			천장크레인(제품)
포트엘(광양)	제선-원료하역		하역기 운전 업무
			하역기 모니터링 업무
포지트(포항)			벨트컨베이어, 스택커 등 설비 운전 업무
롤앤롤(포항)	압연(열연) 롤정비		롤 연마
			롤-초크 정비
			롤 교체(선재)
포롤텍(포항)	압연(냉연) 롤정비		롤 연마
			롤-초크 정비
성광기업(광양)	압연		천장크레인 업무
			공장 업무
포에이스(광양)			제품 업무
			공통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관련)
동일기업(포항)	후판		천장크레인 운전
			시편장 작업
			가스절단
			보수장 검사
			제품관리
시오엠테크(광양)	제선-코크스		부착카본 제거

7-1

			도어 가스 유출 방지 작업(실링)
	포스코엠텍(광양)	제품(코일) 포장	제품 포장 업무
	피에스씨(포항)	제강-연주	주상직
			크레인 운전 작업
			스카핑(핸드) 작업
			스카핑머신 작업
			그라인더머신 작업
			검사 작업
			절단, 세절
	화인텍(포항)	STS 제강, 소둔산세	래들 업무
			정정 업무
7-2	동화기업(포항)	선재 압연 포장, 제품	냉각
			트리밍 및 시편 재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
			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대명기업(포항)	STS 제강-연주	전기로 원료 투입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8	(포항) 포지트, 대명, 화인텍, 동화, 영남, 화남텍, 동일, 롤앤롤 (광양) 포트엘, 시오엠테크, 전남기업, 성광, 포에이스, 대진, 엠텍, 포렌, 드림피아, 동후, 포스플레이트	
9	(포항) 화남테크, 영남산업, 대명 (광양) 포트엘, 전남기업, 동후, 포스플레이트, 성광기업, 포에이스, 대진, 드림피아, 창영산업		

### 3. 진짜사장 원청 대상 직접교섭 요청 공문



# 전국금속노동조합

KOREAN METAL WORKERS' UNION

서울시 중구 정동길 5(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전화 (02)2670-9555 /팩스 (02)2679-3714 / ID:(참) 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중앙 04-24-06-035

시행일자 : 2024. 06. 10(월)

수 신 : 포스코(주) 대표이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참 조 : 담당 부서장

제 목 : 2024년 진짜사장 원청대상 직접교섭(3차) 요청 건

1.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귀 원청회사와의 직접교섭을 요청합니다.

2. 귀사는 포항, 광양등에서 일관제철소를 운영중이고, 위 공장 내에서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공정에 종사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귀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있지 않을 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지휘통제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고, 임금·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본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귀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시간노동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노동조건 및 안전조치 마련 등과 관련하여 본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 제3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에 따라 귀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소변경, 근로시간 단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5. 그동안 원청회사는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않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단지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6.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입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본회의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 된 것입니다. 또한, ILO(국제

노동기구)에서도 2007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귀사의 교섭거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귀사는 이미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잇단 불법파견 판결이 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섭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오만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초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파생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귀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2024년 원청대상 직접교섭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시/장소 : 2024년 6월내로 교섭일정, 교섭장소, 교섭대표 협의
- 교섭대표 : 금속노조 임원, 포스코 소속 비정규단위 대표외 교섭대표단 구성
- 요구안 : 2024년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 별첨

※담당문의 :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010-9776-9296)

끝.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별첨]

### 2024년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

1.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사용
2.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3.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